

#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제정 2008. 03. 31. 규칙 제495호

개정 2015. 02. 12. 규칙 제6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체육대학교 내 연구 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전임교원, 연구원 및 기타 연구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적용범위는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비윤리적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2.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  
<개정 2015.02.12>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총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2.1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으로 교학처장, 대학원장, 체육과학연구소장을 포함하고, 임명직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2.12>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5.02.12>

**제7조(회의 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2>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단, 3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 조사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2.12>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15.02.12>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5.02.12>

③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2.12>

**제10조(예비조사 결과 처리)** ①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5.02.12>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3.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심의·의결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인 이상 위촉한다. <개정 2015.02.12>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위원 보수)**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 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판정)** ① 총장은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에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5.02.12>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5. 조사위원 명단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과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2.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 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4호, 2015.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